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880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대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9.(수)	2026.05.11.(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20.(수)	2026.05.22.(금) ~2026.05.28.(목)(7일간)	2026.06.01.(월) ~2026.06.04.(목)(4일간)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2단지)"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1544-8802)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유선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 10. 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 10. 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등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 없이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포경채.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과는 별개로 적용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9.(수)**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또는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11.(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20.(수)	2026.05.22.(금) ~2026.05.28.(목)(7일간)	2026.06.01.(월) ~2026.06.04.(목)(4일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6)</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해당첨 제한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전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평택시는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분양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인지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없음(면제)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20.)로부터, 거주무기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각각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매제한기간	거주무기기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없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함에 있어 2025.12.30. 개정 시행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6조제1항2호에 의거 '거주무기기간 없음'이 적용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청 **주택과-19491호(2026.04.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6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 최고23층, 5개 동, 총 456세대  
 [특별공급 203세대(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44세대, 신혼부부 66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5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0.204g
- **입주시기** : 2029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55	01	084.8390A	84A	084.8390	23.3669	108.2059	56.6523	164.8582	64.6969	123	12	12	28	3	23	78	45	6
	02	084.9914B	84B	084.9914	24.0423	109.0337	56.7540	165.7877	64.8131	105	10	10	24	3	19	66	39	5
	03	084.9865C	84C	084.9865	23.7681	108.7546	56.7508	165.5054	64.8094	61	6	6	14	1	11	38	23	3
	04	101.9956	101	101.9956	27.2987	129.2943	68.1088	197.4031	77.7803	167	-	16	-	5	-	21	146	8
	합 계										456	28	44	66	12	53	203	25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공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인허가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 조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축물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390A	084.9914B	084.9865C	101.9956
약식표기	84A	84B	84C	10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101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3	1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	3	
	장애인	경기도	2	2	1	-	5
		서울특별시	1	1	-	-	2
		인천광역시	1	-	-	-	1
중소기업 근로자		3	2	2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시·도(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50%	6	5	3	8	22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전국 거주자) 50%	6	5	3	8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28	24	14	-	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1	5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23	19	11	-	53	
<b>합 계</b>		<b>78</b>	<b>66</b>	<b>38</b>	<b>21</b>	<b>203</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타입	공급 세대수	해당 동·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공급금액	계약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2026.09.25.	2027.01.25.	2027.06.25.	2027.11.25.	2028.04.25.	2028.08.25.	
84A	123	6101동 2,3호 6102동 4호 6104동 4호 6105동 2,3호	1층	6	251,516,070	259,383,930	-	510,900,000	10,000,000	15,545,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178,815,000
			2층	6	254,272,950	262,227,050	-	516,500,000	10,000,000	15,825,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180,775,000
			3층	6	259,786,710	267,913,290	-	527,700,000	10,000,000	16,385,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52,770,000	184,695,000
			4층	6	265,349,700	273,650,3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5-9층	30	270,863,460	279,336,540	-	550,200,000	10,000,000	17,51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192,570,000
			10-19층	58	276,377,220	285,022,780	-	561,400,000	10,000,000	18,07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56,140,000	196,490,000
			20층 이상	11	279,183,330	287,916,670	-	567,100,000	10,000,000	18,355,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198,485,000

타입	공급 세대수	해당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공급금액	계약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6.09.25.	2027.01.25.	2027.06.25.	2027.11.25.	2028.04.25.	2028.08.25.		
84B	105	6101동 4호 6102동 3호 6103동 3호 6104동 3호 6105동 4호	1층	4	251,319,150	259,180,850	-	510,500,000	10,000,000	15,525,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78,675,000	
			2층	5	254,125,260	262,074,740	-	516,200,000	10,000,000	15,81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51,620,000	180,670,000	
			3층	5	259,639,020	267,760,980	-	527,400,000	10,000,000	16,370,000	52,740,000	52,740,000	52,740,000	52,740,000	52,740,000	52,740,000	184,590,000	
			4층	5	265,152,780	273,447,220	-	538,600,000	10,000,000	16,93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53,860,000	188,510,000	
			5-9층	25	270,666,540	279,133,460	-	549,800,000	10,000,000	17,49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192,430,000	
			10-19층	49	276,180,300	284,819,700	-	561,000,000	10,000,000	18,05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96,350,000	
			20층 이상	12	278,937,180	287,662,820	-	566,600,000	10,000,000	18,330,000	56,660,000	56,660,000	56,660,000	56,660,000	56,660,000	56,660,000	198,310,000	
84C	61	6101동 1호 6103동 1호 6105동 1호	1층	1	247,725,360	255,474,640	-	503,200,000	10,000,000	15,16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50,320,000	176,120,000	
			2층	3	250,482,240	258,317,760	-	508,800,000	10,000,000	15,44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178,080,000	
			3층	3	255,897,540	263,902,460	-	519,800,000	10,000,000	15,99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181,930,000	
			4층	3	261,362,070	269,537,930	-	530,900,000	10,000,000	16,545,000	53,090,000	53,090,000	53,090,000	53,090,000	53,090,000	53,090,000	185,815,000	
			5-9층	15	266,777,370	275,122,630	-	541,900,000	10,000,000	17,095,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189,665,000	
			10-19층	29	272,241,900	280,758,100	-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20층 이상	7	274,949,550	283,550,450	-	558,500,000	10,000,000	17,925,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95,475,000	
101	167	6101동 5호 6102동 1,2호 6103동 2,4호 6104동 1,2호 6105동 5호	1층	3	280,423,210	288,978,900	28,897,890	598,300,000	10,000,000	19,915,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209,405,000	
			2층	5	283,516,630	292,166,700	29,216,670	604,900,000	10,000,000	20,245,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211,715,000	
			3층	8	289,656,600	298,494,000	29,849,400	618,000,000	10,000,000	20,9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216,300,000	
			4층	8	295,843,440	304,869,600	30,486,960	631,200,000	10,000,000	21,56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220,920,000	
			5-9층	40	301,983,410	311,196,900	31,119,690	644,300,000	10,000,000	22,215,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225,505,000	
			10-19층	79	308,170,250	317,572,500	31,757,250	657,500,000	10,000,000	22,875,000	65,750,000	65,750,000	65,750,000	65,750,000	65,750,000	65,750,000	230,125,000	
			20층 이상	24	311,216,800	320,712,000	32,071,2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평택시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이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체에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청약 신청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고덕국제신도시수자안풍경채.com>)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의거, 주택구입 비용(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신청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b>청약신청자</b> 또는 그 배우자가 <b>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b>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b>청약신청자</b>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b>기존주택 처분 조건*</b>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li>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b>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p>※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b>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b>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b>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b></p> <p>-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b>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b>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b>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b> 당첨이 취소되고 <b>부적격 당첨자</b>로 관리합니다.</p> <p>※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p> <p>※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b>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b>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p>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b>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b></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b>청약통장 자격요건</b>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			
	<b>구 분</b>	<b>특별시 및 부산광역시</b>	<b>그 밖의 광역시</b>	<b>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b>4-1</b>	<b>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b>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	---------------------------------------	-----------------------------------

구분	내용
<b>대상자</b>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b>추천기관</b>	<p>■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p> <p>■ 장애인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p> <p>■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p> <p>■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p>
<b>당첨자 선정방법</b>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또는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거주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인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해당지역 거주자가 낙첨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와 경쟁하나 이 경우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사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또는 전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①소득구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②순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위</th> <th style="width: 8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③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li> </ul>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또는 전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주</b>(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b>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점 산정기준 표</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또는 전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b>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b>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b>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②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b>비고</b>	<b>■ 자산기준</b>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b>구분</b>	<b>금액</b>	<b>내용</b>												
	<b>부동산 (건물+토지)</b>	<b>3억3,100만원 이하</b>	<b>건축물</b>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종류</b></td> <td style="text-align: center;"><b>지방세정 시가표준액</b></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b>건축물 종류</b>		<b>지방세정 시가표준액</b>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b>건축물 종류</b>		<b>지방세정 시가표준액</b>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b>토지</b>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b>구분</b>	<b>내용</b>																							
<b>대상자</b>	<b>■</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b>■</b>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b>청약통장 자격요건</b>	<b>■</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div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인정(50% 적용)	점수
1년 미만	→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 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b>■ 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b>■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b>■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b>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b>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확인)</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5.20.(수) ~ 2026.05.29.(금),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5.2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6.05.22.(금) ~ 2026.05.28.(목)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건본주택</li> <li>-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6</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li> </ul>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소득 등)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서류 미제출 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된 자격 확인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해당 기간이 경과 시 폐기합니다.
-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멸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서류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정부24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①, ② 모두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해외 체류 기간 중 세대원 또는 자녀의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여부 및 체류기간 확인</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 국가에 체류(계속 90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li> <li>※ 해당 기관에서 회신한 '기관추천대상자 명단'으로 대체(견본주택 비치)</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점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li> </ul>
	-	○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출산예정일,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li> </ul>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li> </ul>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의 자녀를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특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견본주택 비치)</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li> </ul>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li> <li>※ 과거 자격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표시로 발급</li> </ul>
	○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li>※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li> </ul>
	-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출산예정일,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li> </ul>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우선공급(또는 일반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특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건본주택 비치)</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건본주택 비치)</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 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등재여부 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특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건본주택 비치)</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li>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li>-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li> </ul>
	○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li>-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li> <li>※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li> </ul>
	-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li> <li>-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출산예정일,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li> </ul>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li>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비속	•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청약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본인 접수 시 필요서류 일체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인감증명서 : 계약자 본인발급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li> </ul>
	○	-	위임장		
	○	-	신분증, 인장(서명)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사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장기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또는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전전년도 재무제표 ③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등기소 - 세무서(또는 홈택스) -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 프리랜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청약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비치 - 세무서(또는 홈택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8, 2019, 2020, 2023, 2024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통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 서울시이택스( <a href="http://etax.seoul.go.kr">etax.seoul.go.kr</a> ), 위택스( <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 ) ②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a href="http://www.eum.go.kr">www.eum.go.kr</a>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② 행정복지센터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6.06.01.(월) ~ 2026.06.04.(목), 4일간 (10:00 ~ 16:00)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6)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 확인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	인지세(정부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대리인 계약 시	○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일체
	○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농협은행	301-0383-5527-51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6101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610102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지정된 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코리아신탁(주)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입금액(현금 수납 포함)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인 평택고덕비에스컨소시엄(주)에서 시행,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평택고덕비에스컨소시엄(주)가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평택고덕비에스컨소시엄(주)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평택고덕비에스컨소시엄(주)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특수목적법인(SPC)는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를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분양수입금 계좌의 명의는 평택고덕비에스컨소시엄(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코리아신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이종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이종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됨.
      - 부부의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 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 공급대금의 60% 범위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대납하며, 입주시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잔금과 함께 입주자가 완납 해야하는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할 예정입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84A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
84B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
84C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
101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83-5535-21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6101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61010201홍길동)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6101동 201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 '610102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 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발코니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14호, 제46조제4항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품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품품목,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 선택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품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단, 침실1의 내창 및 외창은 단창으로 설치됨)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가구, 디자인,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결로 발생,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개별 시공함에 있어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내부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일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측세대+꺾인세대 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프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기본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가전옵션 및 가구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시공 품질에 따라 설치된 난방용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발코니 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인접 확장세대 확장 발코니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 안목치수(수평, 수직)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전기배선기구, 통신배선기구 등의 제품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위치, 벽체두께, 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헤드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확장세대인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84A/C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LG전자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선택 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84B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선택 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선택 3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101	선택 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선택 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선택 3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도 설치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이형(침실1)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한 경우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거실) 및 벽걸이형(침실1)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배관 및 전선이 노출로 시공됩니다.)
- **84B타입의 시스템 에어컨 '선택 3'안은 알파룸특화 선택할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01타입의 시스템 에어컨 '선택 3'안은 주방특화(고급형) 선택할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경우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견본주택용으로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과는 제품이 상이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경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설치 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한 경우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천장형 공기청정기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 위치	제품명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84A/C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거실] : SC01-HLA [주방,침실1,2,3, 알파룸] : SC02-HLA	자이S&D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선택 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84B	선택 1	2대	거실, 침실1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선택 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선택 3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101	선택 1	3대	거실, 주방, 침실1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 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선택 3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능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공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기준에 부합된 제품이나, 동작에 따른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디퓨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은 천장 빌트인 형태로 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가 불가함으로 천장형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천장형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시스템에어컨과 천장형 공기청정기가 '선택 2'안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미선택한 경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 상기 금액은 디퓨저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제품명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주방가구(수납장 또는 훔바) * LG 냉장고+김치냉장고 : M62BAAA332(S)+Z334AAA151(S) * 삼성 냉장고+김치냉장고 : RM70F64R1A (코타화이트) +RQ33DB74E1AP (코타화이트)	84A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LG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삼성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84B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LG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삼성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84C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훔바	LG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7,600,000	760,000	76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훔바	삼성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6,200,000	620,000	62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주방가구(수납장 또는 홈바) * LG 냉장고+김치냉장고 : M62BAAA332(S)+Z334AAA151(S) * 삼성 냉장고+김치냉장고 : RM70F64R1A (코타화이트) +RQ33DB74E1AP (코타화이트)	101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홈바	LG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홈바	삼성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DIE5PT (가구부착형)	LG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DW80F71Y1SEW (가구부착형)	삼성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인덕션	전 주택형	[84A/B] BEI3ASB4 BIE	LG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NZ63B5056AK	삼성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제습기(침실1 드레스룸)	전 주택형	DHV-5PCCU	힘펠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제습기(알파룸 특화)	84B	DHV-5PCCU	힘펠	1,180,000	118,000	118,000	944,000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계약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빌트인 가전(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을 미선택한 경우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며 보유하고 계신 가전의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가전 수납 불가 시 가구 사이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수납장은 가전만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도어의 색상은 지정하실 수 없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색상으로 적용됩니다.
- 상기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가구와의 이격거리(틈새)가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를 미선택한 경우 하부장과 동일한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식기세척기 콘센트는 미설치 됩니다.
- 인덕션을 미선택한 경우, 3구 가스쿡탑과 인덕션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인덕션을 선택한 경우에도 가스 배관 및 차단 밸브는 설치됩니다.
- 84C, 101타입은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선택한 경우 수납장과 홈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84A는 홈바 별도 설치로 주방특화 고급형 선택한 경우 홈바 선택 가능 / 84B는 평면의 특성상 홈바 선택 없음)
- 전타입 침실1 드레스룸에 제습기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84B 알파룸은 알파룸 특화 시 고급 드레스룸이 설치되며 고급 드레스룸 선택한 경우에 제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빌트인 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 중문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800,000	180,000	1,440,000	
	특화	84A/B/C	오픈선반, 간접조명(오픈선반 및 일상화 수납공간), 신발장 내부 사선선반(일부) 및 조명, 신발 살균기,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고급화	1,500,000	150,000	1,200,000	
		101 [특화1]	간접조명(일상화 수납공간), 신발장 내부 사선선반(일부) 및 조명, 신발 살균기,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고급화, 슈벤치, 바닥 대형타일, 조명 고급화	1,700,000	170,000	1,360,000	
		101 [특화2]	[특화1 포함]+복도 장식장 (단, 현관창고와 복도팬트리 통합)	6,200,000	620,000	4,960,000	
주방	일반형/고급형	84A	[일반형]	선택1 : FENDI WHITE NAT+	1,800,000	180,000	1,440,000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특화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LIME STONE WHITE (견본주택 84A 설치안)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선택2 : CALACATTA GOLD (견본주택 84C 설치안)				
		[고급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c' 주방배치+상부플랩장(일부여닫이)+ 상부장조명+히든후드+듀얼 싱크수전+미드 웨이 액세서리+대형 드레스룸(일반사양)	선택1 : FENDI WHITE NAT+ LIME STONE WHITE (견본주택 84A 설치안)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선택2 : CALACATTA GOLD (견본주택 84C 설치안)				
	84B	[일반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선택1 : FENDI WHITE NAT+ LIME STONE WHITE (견본주택 84A 설치안)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선택2 : CALACATTA GOLD (견본주택 84C 설치안)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고급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상부플랩장(일부여닫이)+상부장조명+ 히든후드+듀얼 싱크수전+미드웨이 액세서리	선택1 : FENDI WHITE NAT+ LIME STONE WHITE (견본주택 84A 설치안)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선택2 : CALACATTA GOLD (견본주택 84C 설치안)				
	84C	[일반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고급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상부플랩장(일부여닫이)+상부장조명+ 히든후드+듀얼 싱크수전+미드웨이 액세서리+식탁 일체화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101	[일반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고급형] 세라믹 주방상판 및 벽체+주방가구 길이 연장+상부플랩장(일부여 닫이)+상부장조명+히든후드+듀얼싱크수전+미드웨이 액세서리+팬트리 고급화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홈바&장식장	84A	※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홈바&장식장 선택 가능 주방특화 고급형에서 선택한 세라믹으로 홈바에 적용됨 세라믹 상판 및 벽+선반+하부장+간접조명+ 유리 장식장 ※ [84B] : 홈바 없음 [84C/101] : 빌트인가전과 선택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보조주방 특화	84A		900,000	90,000	90,000	720,000	
	84B	하부장, 액세서리, 손빨래볼, 수전, 콘센트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C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101	하부장, 액세서리, 손빨래볼, 수전, 시스템가구, 콘센트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드레스룸 고급화	84A	[주방 특화 고급형을 미선택한 경우] 유리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파우더 특화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주방 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대형 드레스룸 내부 고급화] 유리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붙박이장+파우더 특화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84B	유리슬라이딩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파우더 특화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고급화	84C	[침실1 불박이장을 미선택한 경우] 유리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파우더 특화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침실1 불박이장을 선택한 경우] 유리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101	유리슬라이딩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불박이장+파우더+조명특화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알파룸 특화 (고급 드레스룸형)	84B	유리도어+벽판넬 및 벽부형 선반(일부 조명형)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불박이장	침실2	84A		1,000,000	100,000	800,000
		84B	불박이장	1,000,000	100,000	800,000
		101		1,200,000	120,000	960,000
	침실1	84C	불박이장(파우더 기능 포함)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드레스룸 내 파우더 삭제	4,000,000	400,000	3,200,000
	침실3		불박이장(침실3 무상옵션 침실3+드레스룸(안) 미선택한 경우 설치 가능) / 침실2,3 가변형 벽체 통합형 미선택한 경우	1,400,000	140,000	1,120,000
욕실 특화	84A/B/C	도기·수전·액세서리 고급화, 욕실상부장 하부 간접등, 욕실선반 및 하부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1 욕조측면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2 샤워프레임 색상 고급화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101	도기·수전·액세서리 고급화, 욕실상부장 하부 간접등, 욕실1 욕조측면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1 욕실선반 및 하부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2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욕실2 샤워프레임 색상 고급화, 욕실2 조명형 은경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다기능 배기팬	전 주택형	복합환풍기(욕실1, 2)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 현관 중문 설치로 신발장의 크기, 현관 디딤판의 크기 및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관 중문과 중문의 손잡이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디자인(프레임 색상 및 유리색상)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84A/B/C타입 현관특화 옵션을 미선택한 경우 오픈선반 및 간접조명(오픈선반, 일상화 수납 하부)은 미설치되며 신발장 내부의 사선형 선반은 일반 가구 선반으로 설치됩니다. 신발장 내부 조명 및 신발살균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창고(팬트리)의 블랙 하드웨어는 실버 색상의 하드웨어로 설치됩니다.
- 101타입 현관특화 옵션을 미선택한 경우 슈벤치, 간접조명(슈벤치, 일상화 수납 하부), 특화 조명, 대형 바닥타일은 미설치되며 신발장 내부의 사선형 선반은 일반 가구 선반으로 설치됩니다. 신발장 내부 조명 및 신발살균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창고(팬트리)의 블랙 하드웨어는 실버 색상의 하드웨어로 설치됩니다. 현관특화 2 미선택시 현관창고(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로 나뉘어 설치됩니다. 현관창고(팬트리)+복도팬트리 통합형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천장의 조명은 일반 현관 센서등으로 설치되며 바닥은 약 600x600mm 포세린 타일로 설치됩니다.
- 현관 팬트리 및 복도 팬트리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과 벽 세라믹을 선택한 경우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개소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이음매는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과 벽 옵션을 미선택한 경우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은 타일(사이즈 약 300X600mm)이 설치됩니다. 인조대리석(MMA) 상판과 벽타일 사이에는 인조대리석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84A/B 타입에 한해 주방 상판과 벽의 세라믹 디자인을 '선택1,2'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1'은 견본주택 84A에 전시되어 있으며 '선택2'는 견본주택 84C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84A타입은 주방 배치가 변경되며 주방 팬트리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포함됩니다. 옵션 미선택한 경우 주방의 배치는 아일랜드 타입의 '11자'형으로 배치됩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84C타입의 아일랜드는 하부에 일부 유리도어와 내부 조명이 설치되며 식탁과 일체형으로 설치됩니다. 옵션 미선택한 경우 아일랜드의 깊이와 길이는 축소되며 아일랜드 하부에 유리도어와 내부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식탁 일체형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101타입은 주방가구 길이가 알파룸까지 확장되며 아일랜드 깊이가 깊어지고 고급 팬트리가 설치됩니다. 단,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알파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기오븐의 위치는 쿡탑 하부에서 키 큰장 위치로 이동되어 인출식 수납장과 함께 설치되며 하부장 찬널에 조명이 적용됩니다. 옵션 미선택한 경우 알파룸 설치로 주방가구의 길이는 축소되며 아일랜드의 깊이도 축소됩니다. 아일랜드 하부의 유리도어 및 조명도 미설치되며 하부장 판넬의 조명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의 액세서리는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특화를 미선택한 경우 상부장이 천장까지 설치되며 여닫이로 설치되고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침니형 후드(상부 가구도어 포함), 일반 2단선반과 다용도걸이 액세서리

- 가 적용됩니다. 상부 플랩장 설치 시 적용되는 외산 하드웨어도 옵션을 미선택한 경우 설치되지 않습니다. 외산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의 홈바&장식장은 주방특화 고급형을 선택한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부장과 아일랜드 사이 가구선반 설치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홈바&장식장 미선택한 경우 상부장과 아일랜드 하부 사이 가구선반 설치
    - 주방특화 고급형+홈바&장식장 선택한 경우 상부장과 아일랜드 하부 사이 가구선반 미설치
  - 벽체 마감 특화 선택한 경우 홈바를 선택하면 가구가 면한 벽에는 판넬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 선택한 경우 히든후드가 설치되며 미선택한 경우 침니형 후드가 가구 도어와 함께 설치됩니다. 히든후드는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특화 고급형 선택한 경우 상부 플랩장 상부에 히든후드 배기덕트 및 가스배관을 위한 커버가 설치되며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옵션 보조주방가구는 건립타입에 비해 다소 깊이가 얇아 손빨래볼이 가로로 설치됩니다.
  - 101타입의 옵션 보조주방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미선택한 경우 드레스룸 도어는 가구도어의 막힌 도어로 설치되며 포스트타입(하드웨어 실버컬러)의 시스템 선반과 벽지, 하부에 걸레받이가 설치됩니다. 파우더는 시스템 가구형 파우더가 설치되며 별도 상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미선택한 경우 파우더 거울의 형태가 상이하며 은경 내 조명위치가 상이하며 미선택한 경우 은경 후면의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조명형 은경은 본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파우더 상판은 인조강화석으로 설치되며 본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타입 드레스룸 고급화는 주방특화 고급형 선택여부에 따라 드레스룸의 형태가 다르며 드레스룸 내 불박이장은 주방특화 고급형 선택+드레스룸 고급화 선택에만 설치됩니다.
  - 84B타입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유리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며 미선택한 경우 가구로 막힌 도어가 설치됩니다.
  - 84C타입 드레스룸은 침실1 불박이장 선택 여부에 따라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미선택한 경우 : 드레스룸 내부에 시스템가구 파우더 적용
    - 드레스룸 고급화 미선택+침실1 불박이장 선택한 경우 : 드레스룸 내부에 시스템가구 파우더 미적용(불박이장에 파우더 기능 있음)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 드레스룸 내부에 특화 파우더 적용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침실1 불박이장 선택한 경우 : 드레스룸 내부에 특화 파우더 미적용(불박이장에 파우더 기능 있음 / 견본주택 건립형)
  - 101타입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드레스룸 도어는 지정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며 도어의 위치가 변경되어 파우더가 드레스룸 내부로 설치됩니다.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파우더와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제공되는 특화파우더의 디자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미선택한 경우 욕실2 스위치의 회로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시스템가구 및 하드웨어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조명형 선반 상부로 조명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형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한 경우 벽판넬 설치로 내부 안목치수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고급화 선택과 미선택한 경우 시스템 선반의 컬러나 옛지 색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드레스룸 고급화 시 설치되는 제습기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알파룸 특화 미선택한 경우 침실도어와 벽지,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알파룸과 알파룸 특화 시 설치되는 고급형 드레스룸의 커튼박스 길이는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식탁등의 개수, 배치, 배열(가로 배치 또는 세로 배치)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방의 우물천장 사이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침실2,3 통합형 선택한 경우 침실2 불박이장 선택이 불가하며 침실2 불박이장의 사이즈는 침실3과 상이합니다.(84C 제외)
  - 84C타입은 확장 시 침실2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침실3 불박이장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침실3+드레스룸 무상옵션 선택한 경우 침실3 불박이장 옵션은 불가합니다.
  - 보조주방 가구 선택한 경우 상판은 본공사 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한 경우 도기 및 일부 수전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설치되며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양변기는 비데일체형 양변기로 설치되며 욕실2는 옵션 미선택한 경우 일반 양변기와 분리형 비데가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선택한 경우 상부장 하부에 간접등이 설치되고 미선택한 경우 스위치의 회로의 수가 변경됩니다.
  - 욕실 특화 선택한 경우 액세서리와 샤워부스 색상이 변경되며 본공사 시 색상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한 경우 설치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 및 수전(비데일체형양변기,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대, 세면대 수전, 욕조 수전)은 본 공사시 메이드 인 차이나 문구가 도기 또는 수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미선택한 경우 욕실 선반과 선반 하부, 욕조 측면의 엔지니어드 스톤 대신 욕실 선반의 지정 인조강화석만 설치되며 욕조 측면에 수납 에이프런이 설치됩니다. 일반 양변기와 세면대, 실버 유광 컬러의 수전, 액세서리 및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 101타입 욕실2의 세면대 상판은 기본 상판과 옵션 상판 모두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서로 상이한 마감재이며 본 공사 시 색상 및 패턴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벽판넬은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기능 배기팬 옵션은 옵션은 욕실1,2를 포함한 옵션으로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기능 배기팬 선택한 경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한 경우 일반 배기팬이 설치되며 배기팬과 점검구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거실 아트월	84A/B/C	세라믹 아트월 (약 1,800mm×1,200mm : 상부 기준)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101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벽체마감 특화	일반형	전 주택형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고급형	84A/B/C, 101(주방특화고급형)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101(알파룸형)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조명특화&거실 실링팬	84A	거실 : 직간접 일체형+복도 스탭등+실링팬 주방 : 라인조명, 우물천장+간접등 침실 : 직간접 조명(침실1,2,3)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B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101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84C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조명특화	84A	거실 : 직간접 일체형+복도 스탭등 주방 : 라인조명, 우물천장+간접등 침실 : 직간접 조명(침실1,2,3)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84B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10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84C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바닥특화	84A	실 전체 : 에디톤스톤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에디톤 스톤 침실, 드레스룸 : 에디톤 마루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84B	실 전체 : 에디톤스톤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에디톤 스톤 침실(알파룸 선택시), 드레스룸 : 에디톤 마루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84C	실 전체 : 에디톤스톤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에디톤 스톤 침실, 드레스룸 : 에디톤 마루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바닥특화	101	실 전체 : 에디톤스톤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에디톤 스톤 침실(알파룸 선택시), 드레스룸 : 에디톤 마루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조명형 전동 커튼박스	84A/B/C	거실 조명형 전동 커튼박스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101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거실 아트월 대형 세라믹 옵션 미선택한 경우 거실 아트월에는 타일(약 600X600mm)로 설치되며,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트월 타일의 줄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체 마감 특화 선택한 경우 일부 벽면에 픽처레일이 설치되며 레일 외의 부자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공사 시 벽판넬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2,3, 공용욕실의 도어에 프리미엄 도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도어 선택한 경우 실 내부에 문선이 설치됩니다. 또한, 공용욕실 도어씰의 크기와 형태가 기본형과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는 프리미엄 도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도어는 별도의 손끼임방지장치 없이 안전댐퍼로 손끼임방지장치 인증을 받은 도어입니다. 단, 지자체 의견에 따라 본공사 시 프리미엄 도어 1면 모서리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도어 미선택한 경우 실 내부의 문선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어의 설치위치도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 도어의 프레임 색상은 타입별로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미선택한 경우 침실의 스위치는 1회로로 적용됩니다.
- 바닥 특화 선택1 선택한 경우 에디톤 스톤과 에디톤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중 거실, 침실은 디밍(5단계), 색온도(5단계) 적용됩니다.
- 거실 조명형 전동 커튼박스 선택한 경우 커튼박스의 너비와 미선택한 경우 커튼박스의 너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실링팬은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조명특화 선택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6)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9.25.	입주지정일
태양열 차단필름	84A/B/C	전창시공 ※ 설치 제외 위치 : 실외기실, 침실1 내창	후퍼옵틱 코리아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01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태양열차단필름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창은 시공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차단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와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시 무지개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기본 선택품목(무상옵션) ※ 발코니 확장 선택한 경우 선택 가능

타입	선택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비고	
전타입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 1	분리형	견본주택은 전타입 분리형으로 전시 - 통합형 선택한 경우 침실2(84C 침실3) 불박이장 선택 불가 - 84C 침실3+드레스룸 선택한 경우 침실2,3 가변형벽체 선택 불가
				선택 2	통합형	
84C	침실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 1	침실3+복도팬트리	-
				선택 2	침실3+드레스룸(침실3 확대형)	침실3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 가변형 벽체는 발코니 확장 시 가능하며, 침실2와 침실3 통합형 선택한 경우 침실벽지는 침실2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침실2,3 통합형 선택한 경우 침실2 불박이장 옵션(84C 침실3 불박이장 옵션)은 불가합니다.
- 가변형 벽체 분리형과 통합형 선택에 따라 스위치와 배선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타입은 침실3 가변형벽체 선택2인 침실3 확대형 선택한 경우 침실2,3 가변형벽체 선택은 불가합니다.
- 84C타입은 침실3 확대형 선택한 경우 침실3 불박이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83-5517-11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와 계좌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6101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610102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6101동 201호 홍길동→'610102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품목(기본 선택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 마이너스 옵션 내용과 해당 공급금액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경우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경우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식당, 복도, 침실 전체, 드레스룸, 팬트리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 현관(현관창고) <타일> 욕실(시멘트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세탁실), 실외기실	바닥난방(욕실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 및 발코니/다용도실 바닥방수, 배수 슬리브, 우수, 배수, 선홈통
② 벽, 천장	<벽> 벽지(초배지 포함) 및 벽체마감, 거실 아트월 타일, 주방타일, 욕실벽판넬,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포함 <천장>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단열+석고보드, 미장,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저)
③ 조명기구, 배선기구	각 실 조명기구, 배선기구 일체(욕실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④ 욕실	<위생기구> 비데,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타일, 천장재(천장틀, 배기철편 포함), 샤워부스, 쟈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⑤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 가스쿡탑,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자동식 소화기	설비배관, 소방관련 시설,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⑥ 창호	문틀(상부 덧판, 문선 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실외기실 도어
⑦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현관 팬트리 도어, 드레스룸 도어, 시스템가구 일체),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수전류 일체(발코니, 다용도실)	월패드, 에어컨 매립배관(거실, 침실1), 완강기(필로티상부세대)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84A	84B	84C	101
금액	36,036,000	36,312,000	36,219,000	43,621,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한 경우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한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개별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내용의 차이(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경우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 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한 경우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경우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 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 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개별 시공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2

## 단지 여건 등

### [공통 유의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계약자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서 기타 사항에 공지된 항목은 "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 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은 현장여건과 상품특화 및 개선으로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5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 석재 마감입니다.(단,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코어외벽은 수성페인트 마감)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정차 구간 및 소방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시설물,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 시설물 위치, 형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 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일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층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입면 디자인(BI/CI, 상부 층 장식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등), 동선 체계 등이 시행 주체 및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조경 공사, 주변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생활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 방법은 'm'으로 표기되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에 의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수는 동일 주택형이나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분양 이후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PF대출 등)하는 경우,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및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경우 기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 계좌를 사업주체인 평택고덕비에스한양컨소시엄(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본 조항에 따른 자금 조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및 계좌번호의 변경, 추후 계좌 명의 변경 사항 일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 인허가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사업계획승인(2025.12.01.) 도면, 사업계획변경승인(2026.02.09.) 도면, 사업계획2차변경승인(2026.04.23.) 도면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사업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및 정부의 정책, 전쟁에 의한 불가항력 자재수급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내부 도로 및 조경계획은 차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이나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설계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 사항을 요청하실 경우, 사업 주체의 수락하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사업주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 면적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기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CG, 모형 등)에 표현된 시설물(문주, 주출입구, 주동 외벽 마감, 커튼월, 석재 및 입면 장식물, 부대복리시설 등)의 디자인, 색채, 형상, 마감 사양 등은 향후 현장 여건, 자재 수급 상황, 상품 개선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지 주변현황

- 청약 전에 사업부지(현장)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 협의 지역으로 항공로에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임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와 인접한 단지 서측 근린공원 및 저류지의 운영에 관한 계획은 관할 관청인 평택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남측에는 약 22m 도로, 동측에는 약 19m 도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빛 공해·분진·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 및 주변 여건에 의해 소음·빛 공해·분진·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 철도, 통행로, 스

- 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 시설, 실외기실, 공용 시설물 등)
- 단지 동측에는 공동주택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이 공급될 경우 프라이버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소음 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근린공원과 저류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 계획되는 영구저류지는 계절별로 수량, 수고 등이 상이하며, 주변 산책로의 식재, 보도 계획은 추후 인허관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해당 용지의 건축계획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저류지의 특성 상 계절별로 해충 및 녹조현상, 냄새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공동주택(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단지)와 상업용지, 교육시설부지(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주변의 각종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침해사항을 당사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개발은 추후 인허관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해당 용지의 건축계획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경관녹지가 조성되며, 경관녹지 구역 밖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 지역으로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주변의 각종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침해사항을 당사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의 경관녹지 계획은 추후 인허관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삭제되거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선형,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께서는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서측 야산(사유지)에 다수 분묘와 사당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의 이전을 해당 소유주, 사업주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미확인으로 인한 침해사항을 당사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발단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통행,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본 아파트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북측에 오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육군 2개 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계획에 따라 지구 내로 이전(군용지)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2개소(알파, 매그넘)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국방부 시행)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입주 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계획도로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위치한 송전선로는 향후 지중화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반영된 변전소 및 케이블헤드 부지 이외에 추가 케이블헤드 부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 등이 존치되어 입주시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일 수 있으며, 계획도로 하부에 송전선로 경과지(지하매설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현재 미정이며, 변전소, 케이블 헤드 및 경과지 등은 향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계획된 업무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혐오시설 유무, 도로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변 환경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산책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현재 부지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주체와 관련 없는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CG 상의 조감도, 배치도 및 단지 모형도 등에 표현된(공원, 학교, 아파트)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후 주변 신축·개발로 인해 각 동의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도시계획도로는 추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신호체계, 도로선형(폭, 레벨,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에 의해 소음·빛 공해·분진·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 철도, 통행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 시설(DA), 실외기실, 공용 시설물 등)
- 인접도로와 당 사업지 단지 내 레벨차이에 따른 보행자 동선 계획(외부계단 등)은 차후 실 시공 시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 학교관련 사항

- 본 사업지의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관할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며 학생 배치는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 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합니다.
- Abc-61BL 공동주택은 (가칭)고덕6초 통학구역에 해당하나, (가칭)고덕6초는 현재 설립미정으로, Abc-61BL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은 민세초에 임시배치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며, 향후 인근 학교 개교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결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bc-61BL 공동주택 입주 중학생은 고덕중학군(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 고덕1중·고덕6중(2029.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Abc-61BL 공동주택 입주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2개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3교(화양2고(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담고(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의 학교 등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및 설립계획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 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 예정 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 시기
유치원	울포숲유(고덕1유)	2025. 3월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월
	함박유(고덕8유)	2023. 3월
	(가칭)고덕10유	2029. 3월(예정)
초등학교	울포초(고덕1초)	2023. 9월
	중덕초(고덕2초)	2020. 3월
	민세초(고덕4초)	2024. 9월
	고덕초(고덕10초)	2022. 3월
	해창초(고덕11초)	2024. 9월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월
	(가칭)고덕3초	2028. 3월(예정)
	(가칭)고덕8초	2028. 9월(예정)
	(가칭)고덕14초	2029. 3월(예정)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 시기
중등학교	민세중(고덕3중)	2023. 3월
	해창중(고덕8중)	2024. 9월
	(가칭)고덕9중	2027. 3월(예정)
	(가칭)고덕1중	2029. 3월(예정)
고등학교	(가칭)고덕6중	2029. 3월(예정)
	송탄고(고덕3고)	2025. 3월
	(가칭)고덕6고	2028. 3월(예정)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유의사항]

### ■ 단지계획

#### [공통]

- 본 단지에 접하는 시설물(옹벽, 조경, 가로등 등), 도로, 구조물 등이 관계기관의 협의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 계획에 따라 소음, 진동, 빛 공해 등의 생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 시설이 단지내 외각 주변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미정임)
- 주차구획은 공동주택 주차장구역과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이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구획 33면(이동형 제외)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고려해 램프 인근으로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과 방문객,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은 주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하므로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혹은 외부인 출입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벽에 설치되는 구조물(커튼월록 등)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세대는 지붕층 태양광 패널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태양광패널 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눈부심 및 빛반사, 일조침해 등의 환경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시설의 계획을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산책로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악취,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에서는 세부 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경관녹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현재 부지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북측에 계획되어 있는 경관녹지의 공사시기가 상이 할 경우 소음, 조망, 빛공해,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인근에 위치한 부대시설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조망, 빛공해,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6105동 저층 세대는 소음, 먼지,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측 도로에 인접한 6101동 저층 세대는 소음, 먼지,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뿔칠, 석재 미장, 그래픽 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펌프실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 데크 전면에 계획되어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의 측량 결과·관련 법규변경·인허가 변경·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단지 단차에 따른 옹벽의 종류, 형태, 위치, 드라이에어리어,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주택형 계약 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및 장애인 램프 등의 시설물의 형태 및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등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하는 외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은 운영 방식에 따라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피뢰침, 단지 사인물,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결정 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진동·빛 공해 등의 생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관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기둥 위치 등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에 작성된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 및 부대시설(펌프실, 전기실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등) 등 단지 내 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각의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장소인 휴게공간 및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단지 내 휴게시설물(파고라, 키즈스테이션 등) 크기 및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의해 단지 내·외 도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시설) 등의 선형, 크기, 위치,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미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단지 내 도로, 시설물 위치, 조경 등은 측량 결과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저층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세대, 도로 및 지상주차장과 가까운 저층부 세대,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 등)의 경우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빛 공해·분진·냄새·진동 등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 공해, 펌프실, 전기실, 제연 헬륨, 환기 드 라이에어리어 등에 따른 소음 및 냄새·진동, 의자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쓰레기 보관소, 재활용 보관소, 공용부 실외기실 등)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산벽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이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유아용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벽체로 시공됩니다. 이때 실간 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각의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피난층, 옥상 조경 공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칭)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별 단위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동 호수별 위치, 주변 건물 등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분양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접세대는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형태는 현장 여건에 의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 ■ 조경 및 주민공동시설

- 지하층의 모빌리티스테이션의 경우, 지하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습기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각 동 세대 비율에 따라 크기 및 규모가 달리 설치됩니다.
- 공동 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이후 조경(옥상조경 포함)관련 유지, 보수, 관리의 시행 주체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전, 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구간에 시설물,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가로경관, 시설물 위치, 형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매트설치 구간은 준공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설치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및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환기 환룸, 제연 환룸 등)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 공해, 분진,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실 시공 단계에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경 시설물, 공동 출입문, 세대 출입구 등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재질·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102동에 인접한 옥외 운동시설은 시설물의 특성상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과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등의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경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가칭)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며 입주 후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적 마감 이외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은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 주변이 조경석 계획은 변경(삭제 또는 수량 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에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공간계획에 따른 기본 마감 외 기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입주자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빛공해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방범관리 시스템 중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단지 출입구, 놀이터 등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지하주차장 지하2층 6102동 ~ 6103동사이 환룸 1개소, 6104동 ~ 6105동 사이 환룸 1개소
- 엘리베이터는 105m/min로 운행하는 기종(에어컨 미설치)으로 설치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공기청정기 사용시 공동전기요금 발생되며 필터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층별로 마감 사양이 다르게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 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본 공사 시 법적 기준 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에어샤워 시스템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적용 아이템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EPS, TPS실 등 각 실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내측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홍보용 싸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 및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홀에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33개소[급속 7대, 완속 26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금형 충전 구역은 일반주차구역에 위치하며 전 기차의 우선 주차 권한이 없으므로 입주 후 관리 규약에 의거 사용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 주차구획 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주차장과 공용부 통로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출입구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부대복리시설 계획으로 6101동 지하1층 주동 출입구 인근으로 입주인 통행이 잦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차 이용 층수는 지하1층으로 설계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그 외 층수는 택배차 이용이 불가함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성능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공사 시 구조, 동선, 디자인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행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약 2.7m, 지하2층 약 2.3m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유효 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입주인 주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패드 설치 구간은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주방환기설비,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과 쓰레기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냄새,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보관소 위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별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출입구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저층부 세대는 이로 인한 조망 간섭,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입구, 공용홀 및 계단실 등에서 진출입 시 바람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배치된 인근 세대는 이에 따른 조망 간섭,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MDF실, 방재실, 유아놀이터, 작은도서관, 수경시설 및 외부 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등 입주자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부 세대는 이에 따른 조망 간섭,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 6101동 2호 라인 후면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인접 세대는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서측에 근린공원에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1동 4,5호라인 지붕과 1,2호 옥탑코어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01동 4호라인에는 커튼월록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부 세대의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01동 후면에는 외부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지하1층에는 주민카페/피트니스/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저층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1호 라인 측면에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1동 4호 라인은 전면이 데크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측면에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어 비상시 측면으로 소방차가 접근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1동 5호 라인은 전면이 데크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후면에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어 비상시 후면으로 소방차가 접근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1동 4,5호 라인은 전면이 데크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1동 라인 전면 데크 부대시설 지붕은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일부 세대의 전유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102동**

- 6102동 1호 라인 측면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2동 북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2동 동측, 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2동 4호 라인 후면에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2동 전면에 휴게시설(수경시설)이 계획되어 이에 따른 일부 세대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02동 2,4라인 저층세대 후면에는 주차입구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3동**

- 6103동 1,4호 라인 인근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3동 4호 라인 측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3동 남측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3동 인근에 휴게시설(수경시설)이 계획되어 이에 따른 일부 세대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104동

- 6104동 4호 라인 측면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1호 라인 전면에는 경로당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3,4호 라인 전면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2,3호 라인 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1호 라인 측면에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4호 라인 측면과 후면에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4동 2,4라인 저층세대 후면에는 주출입구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6105동

- 6105동 1호 라인 동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1호 라인 후면에는 경로당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남측에는 작은도서관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1호 라인 인근에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남측 약 22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5동 남측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부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05동 1,2호라인 옥탑코어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05동 1호 라인 후면에는 D.A(하부우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1호 라인 동측으로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5동 4호 라인에는 커튼월록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부 세대의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 공통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1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팸플릿,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는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 면적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에 따라, 해당 피난구 주변에는 가구나 집기 등을 적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해당 관청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 인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 평면

- 단위세대 내측 치수는 높이에 따른 구조체(벽체)의 두께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기본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물 천장고는 기준 약 2.4m임)
- 건본주택은 기존중세대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가구와 천장 사이에 간격 등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출입문 또는 빌트인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방 레인지 후드 상부 장애는 소방 법규에 맞게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구조가 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배관과 후드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 창고,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하부장(101 부부욕실 해당), 침실1 발코니, 다용도실 등 일부 구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전열 교환 환기장비는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매 매립배관과 실외기 간 냉매배관 연결 시, 미러 타입 세대는 배관 경로 특성상 실외기 후면으로 우회 배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따른 정상 시공에 해당하므로 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설치 부위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니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 습기 유입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피난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기본적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제외(완강기설치)되오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배선공사 등 기능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 대리석과 인조 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 및 벽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 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 세대 및 당해 층 설비 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 벽체는 시공 시에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일반 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 벽, 욕실 바닥, 발코니 바닥,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의 타일, 욕실 벽의 벽판넬 또는 세라믹 나누기와 패턴은 자재의 특성상 건본주택에 게시된 것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 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천장고는 마감재 구배(화장실 등) 및 설비시설로 인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커튼 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시설물로 인해 다소 변경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세탁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의 높이와 관계없습니다.
- 욕실 천장의 배기팬과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장 설비배관에 따라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난간은 미관 및 성능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승강기 및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소방시설, 바닥 배수구, 배선 기구류 등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 타일 구배 및 설비 배관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능개선을 위해 창호 사양(유리종류, 창틀, 크기, 손잡이, 개폐 방향 등), 단열성능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선반은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할 시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량 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 높이 및 출입 도어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 및 욕실배기는 직배기 타입으로 외벽에 후드캡이 설치되며, 해당 후드캡의 형상·규격·색상 등 외형은 시공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외관상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환풍기 가동시 웬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 및 제품에 따라 소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창호 크기는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여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 일부 가구가 설치되는 부분의 경우 후면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은 환기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 형태, 재질, 색상, 손잡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전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벽체 구조를 확인하시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 도어, 가구 및 복도 패널 등의 인테리어 마감은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창호 손잡이는 본 공사시 색상(유광,무광 포함)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류(화장대, 시스템 선반, 붙박이장)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사이즈, 디자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 계획 및 형별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싱크대 하부 장, 상부장 일부는 각종 장비로 인해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벽판넬 등 벽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및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하부 및 붙박이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의 배치, 동선, 복도 폭, 수납량은 세대 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후면 턱 높이(인조대리석 MMA 시공 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액세서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부에는 욕실 벽판넬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 등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 마감재의 색상, 패턴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배선 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센서등은 견본주택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시 점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강마루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강마루의 코어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관중문의 사양 및 규격, 손잡이의 모양과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의 분절라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팬트리 또는 복도팬트리가 기본제공 품목인 경우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에 따라 가구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벽체의 형태가 달라 사이즈 차이가 있는 경우)
- 마감재별 코킹(실란트 등)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 타일 및 기타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 건축 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 용량 이외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실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타입의 욕실2의 세면대 하부장 내부에 배관을 위한 커버가 설치되며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발코니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에어컨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도, 환기 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 및 인근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 또는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 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 조절기(거실용 혹은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공급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평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벽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 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한 내부 구조의 변경은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실외기실 그릴창호는 단열기능이 없는 타입으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창호 형태, 색상, 사양, 창호프레임 두께(풍압계산 결과에 따라)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없으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실 내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단,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는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창호, 옥외공간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및 조명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침실1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와 겸용으로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침실1 발코니 바닥슬라브 오픈 부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상·하부세대로부터 소음 및 피난구 상부 덮개 위를 지나다닐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닥 및 천장 피난구 위치에 물건 적재나 선반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하층 및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는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배수 입상관 또는 생활을 위한 배관이 통과되며 일부 노출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거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거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샤키는 22mm 로이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료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서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공용부의 창호는 재질, 규격, 사양, 손잡이 형태,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 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창 프레임의 구조 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 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 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 방법 등)
- 단위세대는 최고 층수 기준에 따라 벽(두께, 길이 등)이 상이하며 위치별로 서비스 면적 유효 폭, 넓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경우, 설계 구조상 다용도실에 별도의 창호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마감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자재의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 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벽판넬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침실 붙박이장의 크기와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화장대의 가구벽은 배선기구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보다 가구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도장·마감 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마루 굽들과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 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 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 노출 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전기, 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제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및 욕실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 배관, 가스 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 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 등 CG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 색채, 외부 로고사인, 외벽마감, 커튼월, 석재, 입면 장식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84A-C, 101 타입 총 3개의 유닛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외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 표현은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 법규에 의거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등 바닥 및 벽, 천장의 타일(마감재)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등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동일하며, 설치 공간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내부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되며,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벽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됩니다.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설치에 따라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 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할 경우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 박스 시공 시 간섭 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운수 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선반의 하드웨어는 본납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렌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본주택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 문제이며,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 가전류, 침장 및 커튼류, 전시 조명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 품목이므로 본 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등의 문제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주민카페, 근로자휴게실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1층 : 약 2.7m / 지하2층 : 약 2.3m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 능력	VII - 0.204g

■ 자금관리 대리사무

- 코리아신탭(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bc-61BL 공동주택  
 2. 신 청 자 : 주식회사 비에스한양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제1지구 내 Abc-61BL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용수용 저장량	★	20. 인계된 녹지율 조성	★★
2. 생활용수용 저장비율	★★	21. 자연지반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연결	★★
4. 고층소음도 측정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생활자극요소(비오름) 조성	★★
5. 화상 및 화재수 소용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용 저층의 적용	★★
		25. 차양 확기성능 확보	-
		26. 단열재의 확기성능 확보	★★★
		27. 자동차도포장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차·외 보양재 적용도 보실 및 연료	★★
2. 가법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동부분	★★	3. 지적구조자재 및 자재거로로의 적합성	★★
4. 수리용이성 관동부분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환경의 쾌적한 유지	★★★
		6. 운영·유지관리 용이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제동 및 제동	★★★
		8. 화재안전기준을 준수 함	★★★
		9. 단열재의 시공적 적절성	★★
		10. 공용공간에 시공적 적절성	★★
		11. 외단열 단열재의 적용률	★★★
		12. 세대 내 공기 질	★★
		13. 용접부의 충실성	★★
		14. 방화벽 관련 등급	★★★
		15. 주차장 주차 확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bc-61BL 공동주택	인증번호	G-SEED-P-2026-0230-9
건축주	주식회사 비에스한양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제1지구 내 Abc-61BL	유효기간	2026. 03. 04 ~
층 수	지하 2층, 지상 23층	사후관리(실시사항)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을 중점인 날짜	
면적	80,911.9618㎡(평가면적: 80,429.1368㎡)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의 주원 용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설계자	(주)에이엔건축사사무소	평가등급	그린4등급(2025-55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6년 3월 4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2서식] <개정 2025. 10. 01.>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bc-61BL 공동주택	인증번호	20251215-1141-0969
종류	공동주택	평가자	비에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제1지구 내 Abc-61BL	인증기관	한국생산본부인증원
층 수	지상 23층 / 지하 2층	평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80,911.9618 (㎡)	유효기간	시공완료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원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5등급
설계자	(주)에이엔건축사사무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합계	22.54 %
		대지 내	22.54 %
		대지 외	0.00 %
건축물 및 실내외 단열재의 열관류율(U-value) : (㎡)		합계	87.3 kWh/m <sup>2</sup> ·년

※ 해당 인증결과를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 (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연간 단위에너지당 에너지 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쓰는 단위에너지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 (차)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 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 1차 에너지 총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순생산에 대한 백분율

※ 상세한 평가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가)에 따라(환경부령)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 예비인증은 별도 제도적 지원이 없는 건축물은 인증 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5 ) 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한국생산본부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택지비 가산항목	금액(천원, VAT 포함)	건축비 가산항목	금액(원, VAT 포함)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909,190,903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2,477,826,163	
취등록세	3,563,731,531	주택품질향상	주택성능등급	3,547,522,425
		법정초과복리시설	1,605,847,856	
재산세	374,191,810	인텔리전트설비	홈트위크공사비	5,248,683,900
			초고속특등급	1,247,527,800
			에어컨냉매배관설치공사비	1,163,524,500
등기수수료	17,007,155	보증수수료	분양보증수수료	747,173,454
		친환경주택건설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3,308,052,975
택지와 관련된 경비	642,111,106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721,005,300	
		인증 설계비 추가비용	229,392,031	
계(택지비 가산항목)	6,199,726,569	지반관련공사	말뚝박기 공사	1,479,272,736
		법령개정 가산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	1,831,475,157
		전기차충전시설	137,264,600	
		계(건축비 가산항목)	25,965,621,297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결과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87,484,282,716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1,837,056,799	기계 설비	위생기구 공사	1,274,943,320	
	기간이자	892,771,111			용접공사	0		공조설비	652,795,328	
	필요적 경비	630,514,718			조적공사	974,703,316		난방설비공사	1,259,006,431	
	그 밖의 비용	4,564,475,015			미장공사	1,934,712,879		가스설비공사	494,039,653	
	계 [①]	93,572,043,560			단열공사	612,250,526		자동제어 설비공사	210,855,95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200,632,049	방수 방습공사	842,456,590	공사비	그 밖의 공종	특수설비공사	0	
		흙막이공사	0	목공사	2,816,354,775			그 밖의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6,900,642,800
		비탈면보호공사	0	가구공사	2,497,984,227				정보통신공사	2,773,718,931
		옹벽공사	370,238,594	금속공사	1,057,969,883				소방설비공사	5,788,685,844
		석축공사	0	지붕 및 홈통공사	426,126,704				승강기공사	2,334,882,975
		우수·오수공사	1,211,423,572	창호공사	2,723,292,373	이윤	일반관리비		5,844,305,884	
		공동구공사	0	유리공사	636,741,097		계 [②]	114,152,820,31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0	타일공사	1,459,606,015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1,729,344,011	
		도로포장공사	894,327,582	돌공사	911,029,403			감리비	2,642,830,228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25,196,205	도장공사	940,416,910			일반분양시설 경비	21,877,597,322	
	정화조시설공사	0	도배공사	881,640,914	분담금 및 부담금			1,734,079,549		
	조경공사	4,047,238,438	수장공사	1,038,377,230	보상비			0		
	건축	부대시설공사	234,885,991	주방용구공사	2,973,091,091		기타 사업비성 경비	6,370,897,242		
		공통기설공사	4,817,370,222	잡공사	323,268,466		계 [③]	34,354,748,352		
		가시시설물공사	426,126,704	급수설비공사	2,332,901,420		그 밖의 비용 [④]	25,496,687,775		
		지정 및 기초공사	3,536,361,456	급탕설비공사	1,590,000,803					
		철골공사	6,685,781,515	오배수및통기설비공사	652,795,328		합계 [①+②+③+④]	267,576,3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04500 호	₩ 173,924,59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주)이룸이앤씨	(주)정엔지니어링	(주)금라기술단
감리금액	2,200,000,000	555,685,000	104,814,580	143,55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평택고덕비에스한양컨소시엄(주)	제일건설(주)
등록번호	110111-0954422	135811-0093658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2, 13층(문정동,한양타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5호(수기동,제일오피스텔)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86

■ 홈페이지 : <https://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com>

■ 분양문의 : 1544-88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